

문서번호	청소행정과-8268
결재일자	2015.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활용담당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광진	김원식	박현식	손정수	김병환	03/09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기획예산과장 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청소행정담당 주무관		윤정배 이용식 代이정희 김용환 조성진 김하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5. 3.**

**행정국  
청소행정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전 자치구 단일화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 I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최근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 개정 및 보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 추진

## II 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근거인「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 시 업태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 마련(안 제2조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
-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의 용어 변경
  -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
  -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변경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지1 제1호서식 ~ 제3호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 제7호서식 신설

-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 총량제 수수료를 2단계에 걸쳐 인상  
코자 별표1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안 제9조제4항)

(단위 : 원)

구분	용량	개정전 수수료	2015년(1단계)		2017년(2단계)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1 ℓ	60	70	17%	100	67%
		2 ℓ	120	140	17%	190	58%
		3 ℓ	180	210	17%	300	67%
		5 ℓ	300	350	17%	500	67%
	납부 필증	10 ℓ	600	700	17%	1,000	67%
		20 ℓ	1,200	1400	17%	2,000	67%
		60 ℓ	3,600	4200	17%	6,000	67%
		120 ℓ	7,200	8400	17%	1,2000	67%
		RFID계량	kg	75	100	33%	130
음식점	kg	80	130	63%	190	138%	
	ℓ	-	100	-	140	-	
개정전 대비 인상율 평균				23%		74%	

※ 수수료 인상 적용시기 : 1단계 - 2015년 7월 1일, 2단계 - 2017년 1월 1일

- 과태료 부과기준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을 삭제함 (안 제19조제1항)
- 기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  
(안 제8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호 등)

### III 예산분석

예산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예산차액
2015년	세출예산	-	-	-
	세입예산	957	1,064	107
2016년	세출예산	1,680	2,113	433
	세입예산	2,701	3,327	626
2017년	세출예산	1,680	3,033	1,353
	세입예산	2,701	4,761	2,060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배출량 감소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2015년 세입예산

○ '15.7.1.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

구분	용량	연간판매량 ('14년 기준)	반입수수료(원)		세입예산(백만원)		예산 증가액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b>계</b>					<b>957</b>	<b>1,064</b>	<b>107</b>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2ℓ	744,080매	51	68	37	44	7
		3ℓ	3,236,788매	79	100	255	289	34
		5ℓ	403,445매	42	55	17	19	2
	납부 필증	10ℓ	200,860매	96	111	19	20	1
		120ℓ	181,167매	2,520	2,940	456	494	38
	RFID 계량	kg	927,000kg	75	100	69	81	12
음식점	kg	5,476,000kg	19	24	104	117	13	

2015년 세출예산

○ 변동없음 : 종량제 봉투 등 판매수수료를 대행업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음

2016년부터 개선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종량제 봉투 등 판매수입을 세입처리 하고, 대행업체 수집운반비를 세출처리하여 예산 편성.집행

□ 세입예산(2016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용량	연간판매량 (‘14년 기준)	세입예산(수수료-판매이윤)			예산 증가액		
			개정전	‘16년	‘17년	‘16년	‘17년	
계			2,701	3,327	4,761	626	2,060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2ℓ	744,080매	87	98	133	11	46
		3ℓ	3,236,788매	567	637	913	70	346
		5ℓ	403,445매	118	133	190	15	72
	납부 필증	10ℓ	200,860매	118	132	191	14	73
		120ℓ	181,167매	1,304	1522	2,174	218	870
	RFID 계량	kg	927,000kg	69	93	120	24	51
음식점	kg	5,476,000kg	438	712	1,040	274	602	

※ 판매소이윤을 봉투값 비율 개정전 평균2.5%, 개정후 평균 5.5% 적용

□ 세출예산(2016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용량	연간판매량 (‘14년 기준)	세출예산(수집운반비)			예산 증가액		
			개정전	‘16년	‘17년	‘16년	‘17년	
계			1,680	2,113	3,033	433	1,353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2ℓ	744,080매	41	48	65	7	24
		3ℓ	3,236,788매	268	314	446	46	178
		5ℓ	403,445매	95	110	158	15	63
	납부 필증	10ℓ	200,860매	94	110	157	16	63
		120ℓ	181,167매	848	989	1,413	141	565
	RFID 계량	kg	927,000kg	-	-	-	-	-
음식점	kg	5,476,000kg	334	542	794	208	460	

※ 수집운반비 비율을 수수료 개정전·후 동일 적용

□ 예산분석에 따른 주민부담율

구분	개정전	1단계	2단계
주민부담율	46.7%	53%	67%

□ 참고사항

○ 종량제 수수료에 따른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 개정전

(단위 : 원)

구분		용량	처리 수수료	수집운반 비	수집운반 비율	판매 이윤	판매이윤 비율	비고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1 ℓ	60	28	46.7%	2	3.3%	
		2 ℓ	120	55	45.8%	3	2.5%	
		3 ℓ	180	83	46.1%	5	2.8%	
		5 ℓ	300	235	78.3%	7	2.3%	
		10 ℓ	600	469	78.2%	13	2.2%	
		20 ℓ	1,200	939	78.3%	22	1.8%	
		60 ℓ	3,600	2,340	65.0%	-	-	
		120 ℓ	7,200	4,680	65.0%	-	-	
		RFID 계량	kg	75	-	-	-	-
음식점		kg	80	61	76.3%	-	-	
		ℓ	-	-	-	-	-	
평균					64.4%		2.5%	

- 1단계 인상시

(단위 : 원)

구분		용량	처리 수수료	수집운반 비	수집운반 비율	판매 이윤	판매이윤 비율	비고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1 ℓ	70	33	47.1%	4	5.7%	
		2 ℓ	140	64	45.7%	8	5.7%	
		3 ℓ	210	97	46.2%	13	6.2%	
		5 ℓ	350	274	78.3%	21	6.0%	
		10 ℓ	700	547	78.1%	42	6.0%	
		20 ℓ	1400	1,095	78.2%	70	5.0%	
		60 ℓ	4200	2,730	65.0%	-	-	
		120 ℓ	8400	5,460	65.0%	-	-	
		RFID 계량	kg	100	-	-	-	-
음식점		kg	130	99	76.2%	-	-	
		ℓ	100	76	76.0%	-	-	
평균					65.6%		5.8%	

- 2단계 인상시

(단위 : 원)

구분	용량	처리 수수료	수집운반 비	수집운반 비율	판매 이윤	판매이윤 비율	비고
일반 가정 (단독 · 공동 주택)	규격 봉투 · 납부 필증	1 ℓ	100	47	47.0%	6	6.0%
		2 ℓ	190	87	45.8%	11	5.8%
		3 ℓ	300	138	46.0%	18	6.0%
		5 ℓ	500	391	78.2%	30	6.0%
	RFID 계량	10 ℓ	1,000	781	78.1%	50	5.0%
		20 ℓ	2,000	1,565	78.3%	80	4.0%
		60 ℓ	6,000	3,900	65.0%	-	-
		120 ℓ	12,000	7,800	65.0%	-	-
음식점	kg	190	145	76.3%	-	-	
	ℓ	140	107	76.4%	-	-	
평균				65.6%		5.5%	

※ 수집운반비, 판매소이윤은 향후 원가분석, 내·외부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부담율도 변동 가능

## IV 추진일정

- 2015. 3. : 조례 개정 방침, 입법예고
- 2015. 3. : 물가심의/인권/부패/규제심사/성평등 영향평가
- 2015. 4. :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 2015. 6. ~ 7. :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